모두의 학교를 위한 '학교문화 책임규약'

1. 책임규약 목적

•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

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

- ▶ 제2조(정의) 1.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·강제적 심부름,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
- ▶ 제15조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·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3.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

-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,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※ 1호(서면사과), 2호(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), 3호(교내봉사), 4호(사회봉사), 5호(특별교육 이수),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, 8호(전학), 9호(고등학교의 경우 퇴학)

4.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

•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			
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	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		
	<보호자/학부모로서의 책임>		
	✓학교의 교육이념을 지지하고 학교 구성원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(구성원의 의견 수렴)		
<학생으로서의 책임>			
✓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한다.(구성원의 의견 수렴)	✓		
√	✓		
✓		성명	(서명)
✓	<교사로서의 책임>		
✓	✔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,	진심으로	존중하겠습니다.
√	(구성원의 의견 수렴)		
성명 (서명)	✓		
	✓		
		성명	(서명)
2024. 3.	. 25.(월)		

백 산 중 학 교 장